

한경훈 / 2월 / 도약 GS / 8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29059	21	14	18	12	65	1	5.26%	7	19
529165	20.5	13	16.5	7.5	57.5	2	10.53%	5	
534342	21	14	15	7	57	3	15.79%	7	
534426	20	13.5	14	6	53.5	4	21.05%	5	
534241	21	14	14	4.2	53.2	5	26.32%	6	
529237	19	11	14	7	51	6	31.58%	4	
534222	19.5	13	12	6.5	51	6	31.58%	4	
534355	19	13.5	12	6.5	51	6	31.58%	4	
529277	19.5	13	12.5	5.7	50.7	9	47.37%	5	
534165	20.6	13.5	12.5	3	49.6	10	52.63%	5	
534423	18.6	11.5	13.5	6	49.6	10	52.63%	5	
529402	21	11.5	11.5	5	49	12	63.16%	5	
534187	19.1	13	13	3	48.1	13	68.42%	4	
534391	19	10	12	5.2	46.2	14	73.68%	5	
534188	19.5	6.5	16	4	46	15	78.95%	4	
534807	21	13.5	16.5	8	42.5	16	84.21%	7	
534230	17	4	12.5	2	35.5	17	89.47%	4	
534201	16.5	10	8	0	34.5	18	94.74%	5	
534163	17	11	5.5	0	33.5	19	100.00%	6	

<p style="text-align: center;">한경훈/2월/도약GS/8회/1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설문1은 답 맞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설문2는 다각적 조치 및 무효심판에서의 조문 판단 중요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대체 규정에 관한 언급 필요합니다. 상품별로 등록요건 판단 시점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p> <p>(2) 설문 2</p> <p>예상되는 거절이유 누락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무효심판에서 20호와 21호 판단이 틀리는 분들 계셨는데, 요건 다시 복습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효심판 외의 조치도 줄처리로 많이 언급해주면 좋습니다.</p> <p>3. 소결</p> <p>같은 흐름으로 같은 답을 적어도 점수가 달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쓴 것처럼 보이도록 쓰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에서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잘 보이도록 라벨링하기, 목차 글씨 이쁘게 쓰기, 결론에서 문제에서 묻는 대로 답 정리해서 쓰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한경훈/2월/도약GS/8회/2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지리적표시가 있는 표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조문을 잘 찾아서 언급해주면서 답안 작성해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답안에서 언급된 조문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언급하면 됩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문제에서 써주어야 하는 조문들이 정해져있어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 2</p> <p>34조1항8호와 12호전단에 관한 판단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여부에 관한 답 들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8호에 관한 판단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p> <p>3. 소결</p> <p>답안은 쉽게 보이지만, 문제를 풀면서 답안 쓸 때는 당황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p> <p>도약 지에스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p>	

<p style="text-align: center;">한경훈/2월/도약GS/8회/3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2개의 설문 모두 조치를 물어봐서 당황하실 수 있으나, 비교적 전형적인 조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33조 1항 3호와 7호에 해당하므로 조치로서 33조 2항을 기재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논점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안 포섭을 잘 했는지, 해당하는 판례를 잘 적어줬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렸습니다.</p> <p>(2) 설문 2</p> <p>침해 여부를 먼저 판단하신 후 민사상, 형사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적어주셔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너무 많은 판례를 작성한 답안이 있었는데, 강약 조절이 되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p> <p>조치를 작성할 때 조문 병기를 누락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많이 출제되므로 이러한 조문들은 암기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p> <p>3. 소결</p> <p>이번 문제의 경우 다들 논점을 잘 파악하여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p> <p>그래도 점수가 갈린 것은 사안 포섭을 키워드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하셨는지, 필요한 판례를 적절하게 작성하셨는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한경훈/2월/도약GS/8회/4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3문에 이어 4문에서도 상표법상 조치 문제를 물어봐서 다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수 조치를 물어보지는 않았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乙의 등록상표에 존재하는 20호, 21호 등의 무효 사유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작성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문제에 취소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취소사유는 아주 짧게만 검토했어야 했습니다.</p> <p>(2) 설문 2</p> <p>35조 1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상표법상 조치를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조치로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누락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약 당사국에 상표권이 있을 경우,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 논점이 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주세요.</p> <p>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신 경우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3. 소결

이번 회차에 4문까지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답안이 많이 보였는데, 시간 관리는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차츰 나아지니 이번에 답안을 끝까지 작성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느덧 8회차의 도약 GS 과정이 끝났습니다.

4주 동안 주말에 나와서 GS 답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문-1>

I. 섯문 (1)

5.6

1.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대한민국은 자생국으로 지정한 경우 국내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1802).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한
날로부터 2월 내 접수 시 그 날은 출원인으로 본다.
(의정서 324항)

2. 대치

(1) 의의. 취지 - 1832

상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생애 요건 하에 출원일은
상표시적되는 제도이다.

(2) 요건

상표출원일이 ^{상표권자라} 동일하고, 양 상표가 동일하며, ~~출원~~ 영영학
장 허락이 국내 등록일 후에 발생해야 한다.

(3) 상품 범의 개정법

의정서 규칙 개정예 따라 지명상품 일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3. 사안 - 판단시점

(1) 원칙

Ⓜ은 ~~2024~~ 2024. 9. 10 국제출원하여 그로부터 2월 내

	인 2024. 4. 10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었으므로 원칙적인 판단시점은 "2024. 3. 10"이다.
(2) 대체로 인한 합	양 상표가 동일하고, 상표권자와 출원인 모두 甲으로서 동일하고, 가죽재 재킷 가죽 재킷을 영어나 한글로 의 상표권 등록된 바 "2022. 3. 1"으로 합 된다.
(3) 결	'가죽재 재킷'의 경우 대체로 인해 '2022. 3. 1', '재킷'의 경우 <u>'2024. 3. 10'</u>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II. 결 (2) 15.4	
1. 여상 거제이유 - 342항 1호	
(1) 342항 1호 의의 취지	상표권 선출을 등록 상표권자 신용 보호 및 수요자 혼동 방 지를 위해 상표권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범위 상표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① 甲과 乙의 상표는 외관에 있어 명어 대신문자의 차이 가 있으나 문자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흔적이 '바비' 와 '바비스'로 유사하고, 관념 또한 유사한 바 양상표 유사하고, ② 가죽재 재킷과 재킷은 용도·형상·거래 상 등 유사한 유사상품에 해당하는 바 甲의 출

원에는 34조 1항 1호 2거절이유가 있다.

새끼관건

2. 조지 ① - 무효심판 청구

(1) 무효심판 의의. 조지 - 117조

분쟁의 발생지, 해결 수단으로서 이해 관계인은 무효사유
있는 상품권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

甲은 乙의 상품등록으로 자신의 출원이 거절된 유형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정되고 다른 부쟁법 사정 비
지 않아 甲은 심판 청구인 정지 인정된다.

(3) 34조 1항 4호 여부 - 소극

乙이 甲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사정
안으로 분해의 무효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34조 1항 13호 여부 - 적극

1) 의의. 조지

선사용상품 권자 분해 및 수요자 혼동방지를 위해
국내 또는 국외 인식도 취득 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
을 부정확한 목적으로 취득한 상품에 대해 등록
불가하다.

2) 부정확한 목적 판단 취사제

출원에 부정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에는 대상 상품의 인식도, 창작성, 양 상품의 구

성, 상품간의 관계, 교섭 유무 및 내용,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업무의 밀접성, 유사성, 거래실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안

① 甲의 상품은 2022년 당시 영국 내에서 의류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바 Z의 출원 시에 특정한 출처로 인식되었고, ② 앞서 살펴볼 바 Z 상품과 甲 상품은 서로 출처가 유사하여 유사 상품에 해당한다. ③ Z은 영국에서 甲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자로서 국내 총판 권리 양수를 위해 교섭했으나 실패한 점, 甲이 국내 시장 진입을 인지하고 출원한 점, 甲의 상품은 2022년 창작성이 강하고, 영국 내에서 의류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점, 甲과 Z 모두 의류 판매 회사로 그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Z에게 부당한 목적 인정되므로 Z 상품에게는 불 무효사유 인정된다.

(5) 342 항 2호 - 청구

1) 의의.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반영한 규정으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국내 사용·예정임을 알고 동일·유사 상품은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하면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Z은 영국에서 甲으로부터 위류권 수입하여 판매하던 자
로서 甲과의 신의관계 인정되고, Z은 甲이 국내시
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알고 甲 상품과 유사한
상품은 유사한 상품에 출원 했으므로 불 무효사유
인정된다.

(6) 342 항 리헌 - 청구

1) 의의. 취지

파리협약 6조의 1 반영 규정으로서 계약당사국 중 상품과 동
일·유사 상품을 신의관계 있는 자가 출원한 경우
이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2) 사안

甲은 2023.9.1에 영국에서 자신의 상품을 등록받았고,
한국에서 2022년만에 상품을 등록받았다. Z은
앞서 살펴볼바 甲과의 신의관계 인정되고 甲 상품
과 유사 상품을 유사상품에 출원하고 등록받은
바 이에 甲이 동의한 사항도 없으므로 불 무효사유
인정된다.

(1) 2절

甲은 Z 상품에 대해 342 항 13, 20. 2항의 무효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 입증하여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3.	특지 ② - 11921항 3호 취소심판
	Z의 등록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가지 않아 취소심판은 청구할 권리가 없다.
4.	공중등에서 제척 - 9421항 1호대시
	甲은 Z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바 Z의 통의를 얻어 공중등에서 제척을 통해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5.	상표 양도·표기 취소
	Z 상표권 무효사유 존재를 이유로 상표권 취소 표기·양도 취소할 수 있다.
6.	심사결정 중지요청 - 10021항
	무효심판 청구 후 심결 확정 전까지 심사결정 중지할 수 있다.
7.	출원 분할
(1)	의의. 취지 - 1872
	개시법에 따라 출원인 편의를 위해 국제상표출원에서도 분할할 수 있다.
(2)	사안

甲은 저작권이유 없는 가족제지압의 빠른 등록을 위해
재킷 분할 후 삭제보장 할 수 있다.



<문-2>

I. 설문 (1)

1. 적정한 출원 유형

반성독차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짐바 지리적 출
재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2. 출원 절차

(1) 지리적 표시 - 36조 3항. 5항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시 이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정의 일치 증명 서류 첨부해야 한다.

(2) 사안

甲은 출원서에 '반성독차' 및 '독차'를 기재하고, 단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
정의 일치 '증명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3. 등록가액

(1) 정의규정 총액 (221항 4호. 6호) - 230



	<p>전남 번식군은 해양성 기후라 대륙성 기후가 맞물린 사계절 토이 강수량이 많고, 햇빛.그늘이 적당히 만들어지는 것 2 품질이 우수한 녹차가 생산되는 바, 甲은 녹차 생산 업자 라 유능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 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의 귀책 증폭한다.</p>
(2)	<p>출원인 甲의 - 332 2항 甲은 지리적 표시인 번식녹차를 사용한 수 있는 상품을 생 산하는 업자라 유능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인 바 출원인 甲의 인정된다.</p>
(3)	<p>332 항 3호. 4호 - 소극</p>
	<p>1) 의미. 취지 기술적 포장 및 현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품은 등록 불가하다. 자라상품 식별력, 특성명칭을 갖기 때문이다.</p>
	<p>2) 지리적 표시 예외 - 332 3항 산지 또는 현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품 포장이라도 지 리적 표시인 경우 甲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으로 등록 가능 하다.</p>
	<p>3) 사안 '번식녹차'는 녹차의 산지 또는 현시하는 지리적 명칭 이나 지리적 표시로서 출원인 甲의 기능을 수행하는 바 불허 해당 없다.</p>
(4)	<p>결론</p>

甲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등록가능하다.

II. 설문 (2)

1. 3421항 8호 여백-정규

(1) 의의. 취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신용 보호. 수요자 혼동 방지를 위
해 타인 표장나 동일·유사 상품 동일 상품 출원시 등록
불가하다.

(2) 표장 유사 여백-정규

2 출원상품에서 '브리튼'은 지리적 출원가능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브리튼' 결합으로 '브리튼차'의 지리
적 출원가능성도 식별성이 강해 출원되지 않으므로 2 상
품의 표장과 甲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서로 유
사하다.

(3) 연결

양 표장 유사하고 상품 동일하므로 불허 해당
하다.

2. 3421항 12호 제1단-정규

(1) 의의. 취지

품질변화가능 보호를 위해 품질인정서 상품 등록불가
하다.

(2) 사안

2 상품의 상품은 독차이므로 상품을 보고 출원인이 본
에서 생산된 독차로 인한 등 산지 인 영려 있으므로
불 는 해당하다.

3. 342 항 10호, 14호 - 2극

(1) 취지. 의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 및 수자 활동방식을 위해 권리자 지
각시 권리 단체평장과 유사 상품 출원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시 등록 불가하다.

(2) 적용 범위

불 규정은 불래 그 지역의 정당한 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나 ~~사실의 경우 부정한 목적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다.~~ 는다.

(3) 사안

2은 전항 본항에서 독차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부정한~~
~~목적 인정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불 는 해당 없다.

4. 결론 - 등록불가

342항 12호 2단은 상품비행으로 지유될 수 있으나
342항 8호 2단 이유 있으므로 등록불가하다.

<문-3>

I. 설문 (1)

1. 심사관 판단 라다형

(1) 332 항 3호 관련

1) 의미. 취지

기술적 특징의 경우 자라상품 식별력, 특징적응성
없이 등록 불가하다.

2) 기술적 판단 취지

특징의 관념, 상품간의 관계, 거래실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관적으로 판단한다.

3) 사안

甲 상품의 관념은 '그 자리에서 바르 빠르게 대체를
해주는 방식' 정도로 인식될 것인바 자라서비스인 대박업
과의 관계에서 그 성질이나 특징은 직감할 수 있
은 것으로 보이고 거래실정상 대박업 등 중사하는
자에게 흔히 쓰일 것으로 보이는 특징으로서 자라
상품 식별력 및 특징적응성 없이 불 려 해당한다.

(2) 332 항 1호

1) 의미. 취지

보통적 규범으로서 자라상품 식별력 및 특징적응성이 없는
상품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甲의 상품은 앞서 살펴볼바 '그 자리에서 빠르게
바로 해주는 대충'의 의미상으로 수요자에게 직감
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甲에게
이 표장을 특정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부당
하므로 불허 해당한다.

2. 등록 위한 가치

(1) 33조 2항 의미. 가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가치로써 사용에 의해 식별력 취득
등이 의미상으로 등록시켜준다.

(2) 영정해석 원칙 취사체

불규칙은 불래 특정한 의미에 특정시키는 것이 부당한 상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이거나 불규칙
의용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

(3) 33조 1항 3호 내지 7호 해당

甲 상품은 앞서 살펴볼바 33조 1항 3호 및 1호에 해
당할 바 불허 충족한다.

(4) 출처 표시 사용

甲은 출처 표시인 2023년 백리 불 상품을 사용한 바 불
허 충족한다.

(5) 특정한 출처 표시 인식

(1) 판단기준 취사체

사용에 의해 식별력 취득 여부는 사용 기간, 사용 횟수, 계속 사용 여부, 판매 실적, 광고 횟수 및 그 내용, 품질, 서비스, 경합성, 사용 여부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실사용 상품 창작 취지에

실사용상품이 출원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사용된 경우 식별력 취득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사안

① 甲의 실사용상품 1, 2는 출원상품에 식별력이 있는 인터넷, 전화가 부가된 상품으로 당부대처 목적이 동일성이 인정되고 독립성이 인정되어 분리인식 가능한 상품으로 그 사용을 창작할 수 있다. ② 그 전라 甲은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반복적으로 매년 10만 건 광고하고 2025년 9 대복합계 자산 3위로 평가된 김 등 종합적 고려하면 특수인 출처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6) 상품. 상품 알려

甲은 자신이 사용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출원하여 불요건 충족된다.

(7) 인적

甲은 33개 2항 사용에 따른 식별력 취득을 주장.

입증하여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Ⅱ. 선행 (2)

8.5

1. 침해 여부 - 징구

(1) 동일성

제3자가 등록상표와 유사·동일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시 상표권 침해로 본다. (108조1항1호)
사안에서 甲상표 유희 권속하고, 양 서비스 동일 한바 상표 유사, 효력제하 산어본다.

(2) 상품 유사 - 징구

1) 일반 유사 판단 체계

양 상품의 외관·형상·관념을 전체적, 개관적, 이차적으로 관찰하여 지명상품 거래에서 수요자의 일반적 인식의 기준으로 상품 출처 원인·활동 영역 있는지로 판단한다.

2) 외부관찰 필요성 체계

결합상품에서 일부 구성이 독립하여 출처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든, 즉 일부가 있을 경우 정당한 전체관찰 경로 유무는 위해 외부관찰 필요하다.

3) 외부관찰 징구적 기준 체계

외부 관찰시 주된 인상, 인식도, 비중, 상대적 식별력 차이, 결합관계,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 종합

지므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사안

① Z 상표에서 음침을, 100% 여성용품, 쿼일 부분은 단박대추에 비해 상대적인 식별력이 부족하고, 단박대추은 포장의 하가운데 위치하여 그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있는 점, 甲의 계속적 사용으로 인해 단박대추 부분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점, 단박대추 부분만 두꺼운 글씨로 강조하듯 표현되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 상표 모두는 '단박대추' 부류이다. ② 2 상표 및 甲 상표 비교하면 외관적인 글씨체 차이가 존재하는 분자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한칭이 서로 동일하고 관념도 '그 자리에만 골바라 해주는 대추'로 동일할 바 양 상표 유사하다.

(3) 허락지하 - 소극

1) 9021항 2호 의의 취지

식별력 있는 포장 자유 사용 보장을 위해 자상상품의 포장, 현등, 용도 등 별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 허락 지한다.

2) 3322항과 관계 취지

가장, 질감이 3322항에 따라 등록될 경우 동일 그 상품을 사용한 권리를 특정하므로 그다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 시 90
 2항 2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사안

甲은 33개 2항을 통해 甲 상표 등록받은 바
 2 상표 및 부분이 90개 1항 2호 해당된다 해
 도 허용하지 않리다 않는다.

(4) 소결

2 사용은 甲 상표권 침해다.

2. 권리

(1) 민사상 권리

甲은 2에게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할 수 있다.

(2) 형사상 권리

2 조의 안방시 침해죄 고소할 수 있다.

(3) 기타

2에게 경고, 징구청구, 권리행위 확인심판 청구할
 수 있다.

8-4

I. 설 (1)

1. 무효심판 청구

(1) 의의. 취지 - 117조

분쟁 해결의 발발지 수단으로서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적부

丙은 甲으로부터 상품 Y 구입. 판매하는 자로서 이해관계 인정되고 다른 부정법 사항 보이지 않아 적법하다.

(3) 34조 1항 4호 여부 - 2주

2이 甲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한 사항만은 별한 해당한다 함 5 없다.

(4) 34조 1항 2호 - 2주

1) 의의. 취지

신의칙이 발현된 규정으로서 신의관계 있는자가 제 당사자와 상품. 서비스 등을 주고. 유사 상품 등일. 유사 상품 준위시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2은 甲과 계약 파기 후 독자적으로 판매하여 신의 관계 인정되고 甲의 사용 준비를 모른다는 사항 보이지 않으며 유사 상품을 유사상품에 준위한 바 별한 해당한다.

(5) 342 1항 2호 - 징구

1) 의미. 취지

파리협약 6조의 1) 4항 규정으로 계약당사자 등록 상표
표와 동일·유사 상표 동일·유사 상표에 신의관계
있는자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출원시 거절된다.

2) 사안

甲은 계약당사자 일불에 X상표를 등록받았고 甲과
乙은 신의관계 인정되고 유사상표 유사상표 출원
하여 甲 동의 있었으므로 불허 해당한다.

(6) 2항

丙은 342 1항 2호 2항에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1192 1항 1호 취소심판

국내 인식도 취득 사항 없으므로 불가하다.

3. 1192 1항 3호 취소심판

2출원이 등록 후 3년 지이므로 불가하다.

4. 표기. 양도 취소

무효사유 존재는 관계로 상표권 표기. 양도 취소를 할 수
있다.

II. <u>상표</u> (2)	5
1. <u>예상 거액이유</u> - 35조 1항	
(1) <u>의의, 취지</u>	
<p>상표권자에게 불행 및 소비자 인식 불행 위해 상표권 유상표와 동일·유사 상표·상품 출원시 제재된다.</p>	
(2) <u>사안</u>	
<p>2 상표 출원 계속 중인 경우 <u>甲</u> 2 상표·상품 유사하므로 <u>甲</u>이 <u>특정 출원시 35조 1항 해당한다.</u></p>	
2. <u>이의신청·쟁송제공</u>	
(1) <u>의의, 취지</u> - 60조, 49조	
<p>공중 심사 참여 및 심사 정확성 위해 누구든지 거액이유 있으면 <u>이의신청·쟁송제공</u> 할 수 있다.</p>	
(2) <u>사안</u>	
<p>34조 1항 2호. <u>이런 거액이유 있으므로 甲은 2출 원 <u>이의신청·쟁송제공</u> 할 수 있다.</u></p>	
3. <u>권양무시권자출원</u>	
(1) <u>의의, 취지</u> - 46조	
<p><u>내국인대우</u> 실현을 보장 위해 <u>신상</u> <u>출원</u> 하 <u>판 대</u> <u>심사</u> <u>거부</u> <u>제</u> <u>도</u> <u>다</u>.</p>	
(2) <u>사안</u>	

甲은 2025.2.14 일발 출원했으므로 그로부터 6월
내 시기의 표면 충족되고 상표. 상품이 동일
하며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甲이므로 국내
상표관리원 책임하여 권역유지권 주장출원시 ~~출원~~
#35조 1항 판단시 판단시점 인정되어 2항다
시출원이므로 등록가능하다.

4. 출원등의시 제척

(1) 의의. 취지 - 35조 6항

거래상행 방영. 불편 해소 위해 유사범위 출원시 등록
의반으로 등록가능하다.

(2) 사안

甲은 2의 동의를 얻어 출원등의시 제척하여 등록
받을 수 있다.

5. 표기. 취하. 양도 제척

2 출원 개척이유 있으므로 출원 취하. 표기. 양도
제척할 수 있다.

— 이 하 여 배 —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1]

I. 설문(1)

4/6

1. 甲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취급

(1) 국제등록상표등록출원인 의 위 - 法180조 1항
마드리드 의결서에 따라 국제출원 으로서 대한민국은
의정국으로 의정한 출원인 이 법에 따른 출원인으로 본다.

(2) 국제상표출원인 의 출원일 - 法180조 2항
마드리드 의결서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이 법에 따른
출원일로 본다.

(3) 4인

1) 국제등록일
甲은 2024년 3월 10일 출원상표를 국제출원
하였고 이로부터 2개월 내인 2024년 4월 10일이
국제 사무국이 접수되었으므로 2024년 3월 10일이
국제 등록일이다. (의결서 3조 4항)

2) 대한민국의 출원일
法180조 2항에 따라 우리나라 출원일을 2024년
3월 10일로 본다.

2. 대체 인정 여부 - 法183조

(1) 의의, 취지
인정 요건 하에 국내 등록 상표의 출원일을 국제등록

상표의 출원일로 본다. 상표권 관리의 편익을 위함이다.

(2) 요건

- ① 상표권자와 국제등록 명의인이 같을 것
- ② 상표는 물리적으로 동일할 것
- ③ 영역확장의 효력발생인 (국제등록인)이 국내등록상표
상표등록인 이루어질 것

(3) 시간

- ① 원리자는 甲으로 동일하고, ② 상표도 "Barbour"로
동일하며 ③ 국제등록일인 2024년 3월 10일 이전인
2022년 말에 상표를 등록받았으므로 '가 국제 시점'에
대해 대체 효과가 인정된다.

3. 결론

- ① 가 국제 시점은 2022년 3월 1일을 출원일로 보고
- ② 재킷은 2024년 3월 10일을 출원일로 본다.

II. 설문(2)

15.4

1. 甲 상표의 등록 목적성

(1) 法 34조 1항 3호 의의, 취지

선등록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의 출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

범위 내의 출원은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가죽재 지갑과는 별도로 '재킷'에 대해서는 대체의
소유자가 인정되지 않는바, 공의 선출원이 이러한
등록상도와의 관계에서 法 34조 1항 3호에
해당한다.

2. 甲 소치 - 가죽재 지갑에 대해서만 등록받으려는 경우

(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법

부분거권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킷'에 대해서는
法 34조 1항 3호에 해당하지만 '가죽재 지갑'에 대해서는
거권이유가 없으므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등록
가능하다.

(2) '재킷' 삭제 보정 또는 갈음

거권이유 있는 '재킷'에 대해 거권이유통지 이후
삭제 보정을 하거나 (法 185조) 국제 4부칙에
갈음 신청을 할 수 있다.

3 甲 소치 - 모든 상품에 대해 등록받으려는 경우

(1) 무호상판청구 - 法 117조

1) 의미, 취지

본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익상 하과 있는



상표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法 34조 1항 13호 여부 (특극)

① [의의, 취지] 모방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사용과 별 수표와 보호 위함이다.

② [부정한 목적 판단 判例] i)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ii) 광각성의 정도 iii) 상표의 유사 여부 iv) 상표 간 선연관계 v) 당사자 간 노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사안] i) 乙은 甲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자로 甲과 노점을 하였으나 실패했고, ii) 상표는 'BARBOURS'로 甲의 상표 'Barbours'와 표칭·관념이 유사하고 외관도 영어 대소문자 크기에 불과하여 유사하다. iii) 상표는 의류라는 분야에서 공동의므로 乙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iv) 따라서 乙은 甲이 국내 시장 진입 자금을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法 34조 1항 13호에 해당한다.

3) 法 34조 1항 20호 여부 (특극)

① [의의, 취지] 신의실실향칙이 위반된 출원의 등록 불허 규정으로, 일정 선의관계에 있는 자가 유사범위에서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한다.

③ [4만] i) 乙은 甲으로부터 이류를 수입하던 과로
 신의관계가 있고 ii) 甲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것을 인가하였으며 iii) 상표는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하므로 法34조 1항 20호에 해당한다.

4) 法34조 1항 2호 여부 (각각)

① [의의, 취지] 파리협약 준수를 위해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를 일정한 신의관계에 있는 자가 유사
 범위에서 출원한 경우 등록을 불허한다.

② [4만] i) 甲 상표는 2023년 9월 1일 영국의 등록
 되었고 ii) 乙은 甲과 일정한 신의관계가 있으며 iii)
 상표, 상품 모두 유사한 바 法34조 1항 2호
 해당한다.

5) 소견

甲은 法34조 1항 13호, 20호, 21호를 이유로
 乙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존등이서 제를

甲은 2개의 공존 형상을 통해 공존등이서를
 제출함으로써 가결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3) 심사청취청기요청 - 法70조 1항

甲 출원의 등록여부결정 시 전 심사청기를 요청하여
 乙의 등록상표를 소멸시킴으로써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4) 상표권 포기 및 양도권

乙의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은 이유로
甲 과신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권능상
포기한 것은 요청할 수 있다.

[문제-2]



I. 실문(1)

1. 甲 출원의 적격한 유형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 의미, 취지 - 法 2조 1항 6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또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표장으로서 단체표장
권과 별 단체원의 신용 및 수요와 보호 위함이다.

(2) 4단

보성녹차의 품질·평가가 보성군의 해당형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맞물리고 수확양도에 강수량도 많고
물이 관 배치는 흙으로 되어 있으며 햇빛과 그늘이
적당히 만들어진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특성이
보성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2. 甲 출원 권리



- ① 출원서 (法 36조 1항) 제출,
- ②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제출,
- ③ 지리적 표시의 정의를 함의하는 서류 제출은 요한다.

3. 甲출원 등록가능성

(1) 국제적 요건 검토

甲은 녹차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그로부터 녹차를
 납품받아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므로 국제적 요건을 만족한다.

(2) 객체적 요건 검토

甲의 표장 '보성녹차'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 규정
 (法 2조 1항 4호)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法 2조
 1항 6호) 규정을 모두 만족한다.

(3) 法 33조 1항 3호, 4호 해당여부 (소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해 法 33조 1항 3호 등
 소극, 法 33조 1항 4호의 적용이 없는 바 (法 33조
 3항) 식별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4) 法 34조 1항 12호 전단 해당여부 (소극)

실무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해 필수요인
 열거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보는 바 法 34조 1항
 1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상기 서술한 사권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사권이유도 보이지 않는 바 甲 출원인 등록 가능
 하다.

II. 설문(2)

1. 法 33조 1항 3호, 4호 해당여부 (소극)

"오리온"과 "보성녹화"의 결합으로 전체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法 33조
 1항 3호,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法 34조 1항 12호 전단 해당여부 (적극)

2호 "오리온 보성녹화"라는 표상을 "녹화"에
 대해 출원하였는데 이는 "녹화(보성군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관할)"이라고 관정보관하지 않으면
 法 34조 1항 12호 전단이 해당할 수 있다.

3. 法 34조 1항 8호 해당여부 (적극)

3 출원상표에서 "오리온"은 지리적 출처표시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보성녹화"가 지리적 출처표시기능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甲의 단체표상과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동일하여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 열려 있는 바 유사하여 法 34조 1항 8호에

책임한다.

4. 法 34조 1항 10호 책임여부 (적극)

① 보성녹차는 그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② 표상은 서로 동일하고 ③ 상품도 동일하므로 法 34조 1항 10호 책임한다.

5. 法 34조 1항 14호 책임여부 (적극)

① 보성녹차는 지리적 출처 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② 표상은 동일하며 ③ 乙은 전술 보성군에서 녹차를 생산하는 업자이므로 甲의 단체표상을 알고 있는 것임에도 甲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부정관 복권 인정되어 法 34조 1항 14호에 책임한다.

6. 결론 - 등록 불가

乙은 法 34조 1항 8호, 10호, 12호 전단, 14호에 해당하는 출원을 하였으므로 등록 불가하다

7

14

[문제-3]

I. 선문(1)

9.5

1. <특33조 1항 3호> 해당여부

(1) 의미, 취지

과타상품 식별력이 없고 독립적응성이 없는 상품의 등록을 불허하기 위해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품은 등록불가하다.

(2) 기술성의 판단기준 제시

상품이 지닌 관념, 지칭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사안

① 甲의 상품 '단박대클'은 '빠른 대클'이라는 관념을 지니고 ② '대부업'과의 관계에서 '빠르게 대클해주는 서비스'임을 직감할 수 있는 바, 과타상품 식별력이 없고 ③ 거래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시로서 독립적응성도 없으므로 <특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

2. <특33조 1항 1호> 해당여부

(1) 의미, 취지

기타 식별력 없는 상품의 등록을 불허하기 위해



보충권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기타상표식별력과
독립적응성 없는 상표의 등록을 불허한다.

(2) 사안

甲 상표는 ㄱㅈㅈㅈ 1항 3호의 기원적 표상에도
태당하고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도 태당하여
식별력과 독립적응성 모두 없으므로 ㄱㅈㅈㅈ
1항 3호에 태당한다.

3. 甲 권리 - 사용이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

(1) ㄱㅈㅈㅈ 2항 의미, 취지

상표 사용자 및 수요가 보호 예외 출원 전부터
식별력 없는 상표를 사용한 것과 특정 출처로 식별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하다.

(2) 엄격 해석의 원칙 判例

ㄱㅈㅈㅈ 2항은 특정인에게 독립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당한 표상에 대해 대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므로
2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3) 출원 전부터 사용여부 (적극)

甲은 출원일인 2025년 4월 6일 이전 2019년
6월 회사 설립과 동시에 '甲상표'를 사용해왔
으므로 문제 없다.

(4) ㄱㅈㅈㅈ 1항 1호도 태당하느니 여부 (적극)

개정법상 3항 3항 1항 1항에 해당하는 상품과도
 사용이 이한 식별력은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5) '甲'의 출처로 식별되었는지 여부 (꼭꼭)

1) 판단기준 제시

상품의 사용기간, 횟수, 광고 선권의 비용·기간,
 정합적 사용의 정도, 상품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실사용상품의 활각방위 제시

출원상품과 독립성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분리인식될 수 있다면 실사용상품의 사용실적은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3) 소안

① 실사용상품 1, 2 내에서 '인터넷', '전화'는
 '대부업'에서 흔히 쓰이는 표적이 불과하여 ②
 출원상품 '단박애플'이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
 한 채 분리인식될 수 있는 바 사용실적 활각가능
 하고 ③ 甲은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실사용상품들을 사용함으로써 방송이나 신문 등은
 통해 매년 10만 건의 광고를 하여 광고비로
 500억원 가량을 지출한 점, 2025년 초에
 이르러 대부업계에서 3위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甲'의 클러치 식별되었다고 보여진다.

(6) 사용상표를 사용상품에 대해 클러치 여부(적극)

甲은 클러치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신사용상표를 사용하였고, '대북업'과 '각종대북방식'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문제 없다.

(7) 소변

甲은 2항 3호 1항 3호, 소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클러치상표 사용에 대한 식별력은 취득했음은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4. 결론

① 심사관의 판단은 타당하나, ② 甲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입증함으로써 등록 가능하다.

II. 원고(2)

경질판리

乙은 정당권한 없이 甲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상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침해에 해당하는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취득한 경우에도 1) 유사판단 및 2) 로열티제한 사유 판단 시 제한이 없는지 살핀다.

2. 상표 유사여부 (권주)

(1) 등록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케이스

등록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사용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대해서는 모두 볼 수 있다.

(2) 사안

甲과 乙은 모두 '대복업'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품 범위가 동일하다. 따라서 각 상표 내의 상대적 식별력이 높은 부분은 '언박' 대글'로서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 바 클러호동 을 일으키는 유사상표이다.

3. 효력제한 사유 존재 (소주)

(1) 케이스

등록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므로 법 90조에 의해 상표권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2) 사안

甲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이 사용하는 상표는 법 90조에 의해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4. 甲의 조치

(1) 민사상 조치

甲은 乙에게 ① 침해금지 청구, ② 손해배상 청구
③ 신용회복청구 ④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2) 형사상 조치

乙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침해죄 (法 230조)로
고소할 수 있고, 乙이 범인이라면 양벌규정이 적용
되며, 몰수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기타 조치

乙에게 침해금지 가처분, 가압류, 적극적 권리행위
확인소판 등의 조치를 취해볼 수 있다.

[문제-4]

I. 실문(1)

1. 丙 조처 ① - 부호실판 청구 (적극)

(1) 의미, 취지 - 法 117조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익상 하라있는
상호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法 34조 1항 13호 예부 (소극)

乙은 甲의 X와 유사한 상품 X'를 유사한 상품 Y'
에 출원하였고, 甲이 관공에 출원하지 않음을 알고
출원한 것으로서 부정한 목적 있는, 인식도 취득

사정이 보이기 않는 바 34조 1항 1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34조 1항 20호 여부 (적극)

① 甲과 乙은 판매계약을 통해 일정한 신이관계
있고 ② 乙은 甲이 국내에서 사용할 것을 알면서
③ X와 유사한 X' 상품을 ④ Y와 유사한 Y' 상품이
출원하였으므로 34조 1항 20호에 해당한다.

(4) 34조 1항 21호 여부 (적극)

① 甲과 乙은 민생 신이관계 인정되고 ② 조약당사국
일부에 등록된 甲 상품 X와 유사한 X' 상품을
Y와 유사한 Y'가 출원하였으므로 34조
1항 21호에 해당한다.

(5) 소변

丙은 乙의 등록상품에 대해 34조 1항 20호
및 21호를 이유로 무효실판은 합당하여 그 소변을
기대할 수 있다.

2. 丙 소외 ② - 취소실판 청구 (적극)

乙은 등록상품 X와 사외징별상 동일성이 인정되리
않는 X'를 기성상품 Y와 사외징별상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Y'가 사용했으나, 3년 기간요
요건을 만족하지 않나 취소실판 청구는 불가하다.

3. 丙 3회③ - 표기 불양수

乙의 등록상표에 부호사유 있음을 이유로 乙에게 표기나 양수를 권유해볼 수도 있다.

II. 환원(2)

3.5

1. 甲 3회④ - 권보제공, 이의신청(法 49조, 60조)

甲은 乙의 등록상표에 法 34조 1항 2호, 2호의 기각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등록을 취할 수 있다.

2. 甲 3회⑤ - 공존등이시 제출

甲은 乙와의 공존 형상을 통해 공존 등이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3. 甲 3회⑥ - 조약우선권 즉각 출원(1) 의의, 취의 - 法 46조

바road민대우 실효성 보강 위해, 조약당 43 즉각 출원 6개월 이내에 등인상표를 관공이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 인정되어 출원일이 적용된다.

(2) 4만

甲의 예상거래이유는 法 35조의 선출원즉시 위반인 바, 2회과 甲은 상표관리인 제정(法 6조)을 통해 일본의 출원인인 2025년 2월

14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관공에 조약 유선권
추방 출원을 함으로써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4. 甲의 출원 ④ - 실사권자 증치모형 - 제70조1항

乙의 출원이 등록되기 전 실사권자 증치모형을
동해 乙의 등록을 취지하고 甲과신의 출원의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